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 ㉡ 균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를 면전에서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준수사항 중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에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 ○ ⇨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8.4.24, 2006도8644).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6 문 10 ㉠
- ㉡ ○ ⇨ 대판 2002.12.27, 2002도2539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6 문 10 ㉡
- ㉢ ○ ⇨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

- 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5 문 9 ㉣
- ㉤ ×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식류는 오히려 부수적으로 조리·판매한 경우, 이를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일반 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의 정신과 위 법령규정의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다(대판 2012.6.28, 2011도15097).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5 문 9 ㉤
- ㉥ ×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4.4.30, 2013도15002).

2. 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②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③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



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 ④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작위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① ○ ⇨ 대판 1996.9.6, 95도2551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73 문 2 ㉠
- ② ○ ⇨ 대판 2002.5.24, 2000도1731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78 문 9 ③
- ③ ○ ⇨ 대판 1994.4.26, 93도1731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79 문 10 ③
- ④ × ⇨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신의성실·조리 또는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대판 1977.1.11, 76도3419).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넓다.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77 문 7 ②

3.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甲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乙은 당구큐대로 화장실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②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③ 임신부를 강타한 것이 그 이후 낙태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임신부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 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① ○ ⇨ 대판 1990.10.16, 90도1786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90 문 3 ④
- ② × ⇨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을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4.28, 87도297 ; 산림실화 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93 문 7 ㉡
- ③ ○ ⇨ 대판 1972.2.28, 72도296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00 문 2 ①
- ④ ○ ⇨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2001.6.1, 99도5086 ; 휴즈콕크 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90 문 3 ③

4. 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③ 새로 목사로 부임한 자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 ④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 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고의가 있다.

- ① ○ ⇨ 대판 2002.6.28, 2002도2425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10 문 4 ④
- ② ○ ⇨ 대판 1995.1.24, 94도1949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05 문 4 ③
- ③ × ⇨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



을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대판 1985.5.28, 85도588).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07 문 7 ㉠

④ ○ ⇨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4.4.10, 2012도8374).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13 문 3 ㉡

5. 정당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③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사용자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 ⇨ 피해자의 범죄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사용하지 않고 업무관련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고, 검색결과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발견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9.12.24,

2007도6243 ; 하드디스크 검색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76 문 2 ㉢

- ② ○ ⇨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 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지므로, 종사자인 신문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7.14, 2011도639).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78 문 4 ㉣
- ③ ○ ⇨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5.13, 2009도14442 ; 노회찬의원 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97 문 9 ㉤
- ④ ○ ⇨ 대판 2010.3.11, 2009도5008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183 문 13 ㉥

6. 법률의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③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④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① ○ ⇨ 대판 2006.3.24, 2005도3717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229 문 4 ㉠
- ② × ⇨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5.11, 2006도1993).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224 문 12 ①

③ ○ ⇨ 대판 1994.8.26, 94도780 ; 탐정업 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220 문 6 ③

④ ○ ⇨ 형법 제16조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222 문 9 ①

7.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해의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②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上衣)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걸을 더듬은 경우 절도의 범행은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③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 ④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때에는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 ⇨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2003.6.13, 2003도1279).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261 문 1 ④

② ○ ⇨ 대판 1984.12.11, 84도2524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277 문 1 ①

③ × ⇨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5.4.23, 85도464 ; 손전등 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259 문 9 ①

④ ○ ⇨ 대판 2011.1.13, 2010도9330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255 문 3 ③

8. 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②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매매한 이상 사기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나 중간소지인들 및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 ③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④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대판 1997.9.30, 97도1940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306 문 7 ㉞

② ○ ⇨ 대판 1997. 9.12, 97도1706 ; 딱지어음 사건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309 문 12 ㉞

③ ○ ⇨ 대판 1995.9.5, 95도577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330 문 7 ④

④ ×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판 1984.12.26, 82도1373).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305 문 5 ③

9. 죄수(罪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



의 죄만이 성립한다.

- ②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제적 경합이다.
- ③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 ④ 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① ○ ⇨ 대판 2003.2.28, 2002도7335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385 문 8 ②  
 ② ○ ⇨ 대판 1979.7.10, 79도840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361 문 1 ㉞  
 ③ ○ ⇨ 대판 1991.9.10, 91도1722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364 문 4 ②  
 ④ ×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6.25, 2009도3505). 김현형법총론 기출총정리 P. 369 문 11 ②

10.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 ②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배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

- ④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2000.7.4, 99도4341).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5 문 7 ②  
 ② ○ ⇨ 대판 2005.12.9, 2005도7527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5 문 7 ③  
 ③ × ⇨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4.11.4, 94도2361).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5 문 7 ④  
 ④ × ⇨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1993.7.27, 92도2345 ; 자궁적출사건).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7 문 12 ③

11. 체포·감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②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 ③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방지를 위해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 ⇨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판 2002.10.11, 2002도4315). 한편,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64 문 10 ①  
 ② ○ ⇨ 대판 1998.5.26, 98도1036 김현 형법



각론 기출총정리 P. 62 문 7 ①

- ③ ○ ⇨ 대판 1982.6.22, 82도705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58 문 1 ㉔
- ④ ○ ⇨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 볼 바 아니어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8.11.8, 88도1580 ; 형제복지원사건). 현행 판례에 형법 P. 85

12.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㉑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㉒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㉓ 종종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종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㉔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㉑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 경찰청민원실 사건).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20 문 1 ③
- ㉒ ○ ⇨ 대판 2008.1.17, 2006도1721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35 문 2 ①
- ㉓ × ⇨ 종종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종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종 회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종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판 1995.10.12, 95도1589).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26 문 11 ①

- ㉔ ○ ⇨ ○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3.11.28, 2013도5117 ; 전자투표 사건).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41 문 10 ②

13.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비록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하더라도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그쳤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 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① × ⇨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대판 1995.9.15, 94도2561 ; 열굴만 들이민 사건).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49 문 5 ①
- ② × ⇨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6.9.14, 2006도2824 ; 출입문 당겨본 사건).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48 문 4 ④
- ③ ○ ⇨ 대판 2002.9.24, 2002도2243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49 문 5 ③
- ④ × ⇨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5.8, 2007도11322).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47 문 2 ③



14.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甲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 ②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인甲의 명의로 구입·등록하여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乙 몰래 가져간 경우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의 행위는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④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① ○ ⇨ 피고인이甲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7.12, 2012도1132).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89 문 12 ㉔
- ② ○ ⇨ 대판 2012.4.26, 2010도11771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89 문 12 ㉓
- ③ × ⇨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7.10, 2008도3252 ; 냉장고 전기소비사건).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90 문 14 ㉔
- ④ ○ ⇨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 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 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 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대판 1996.10.15, 96도2227).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162 문 1 ㉑

15.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흥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흥기를 휴대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 ① × ⇨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10 문 2 ㉔
- ② × ⇨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4.11.28, 2004도5074 전원합의체).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07 문 13 ㉓
- ③ × ⇨ [1]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甲으로부터 술값(26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재물을 객체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5.16, 2014도2521).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09 문 16 ㉓
- ④ ○ ⇨ 대판 1973.11.13, 73도1553 전원합의체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06 문 11 ㉑

16.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입소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 ④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 ⇨ 대판 2010.6.10, 2010도1777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34 문 25 ㉓  
 ② ○ ⇨ 대판 1997.9.9, 97도1561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37 문 29 ㉓  
 ③ × ⇨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25 문 10 ㉑  
 ④ ○ ⇨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98.4.14, 98도231).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36 문 28 ㉔

17.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예금인출행위는 예금주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 ②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 판단 가운데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 ③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甲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甲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 ④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① × ⇨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4.24, 2008도1408).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318 문 7 ㉔  
 ② ○ ⇨ 대판 2013.4.26, 2011도6798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281 문 6 ㉔  
 ③ ○ ⇨ [1]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甲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대판 2012.9.13, 2010도11665).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315 문 4 ㉔  
 ④ ○ ⇨ 대판 1999.9.17, 97도3219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316 문 5 ㉔

18.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하여 그 토지를 공터로 두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이용하자 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법률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법률상의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③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④ 우리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에 의한 일반교통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 ① × ⇨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대판 1984.11.13, 84도2192).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411 문 1 ㉞
- ② ○ ⇨ 대판 2008.11.13, 2006도755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408 문 2 ④
- ③ ○ ⇨ 대판 2002.4.26, 2001도6903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409 문 4 ③
- ④ ○ ⇨ 형법 제189조 제2항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409 문 4 ①

19. 유가증권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 외 증권의 유통성까지 필요로 한다.
  - ③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 ④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정보를 조작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든 경우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한다.

- ① ○ ⇨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1.16, 2005도4764).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418 문 1 ④
- ② × ⇨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대판 2001.8.24, 2001도2832). 김현 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419 문 3 ④
- ③ ○ ⇨ 대판 1983.6.14, 81도2492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422 문 8 ②
- ④ ○ ⇨ 대판 1998.2.27, 97도2483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421 문6 ㉠

20.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②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 ③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 ④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된다.

- ① ○ ⇨ [1]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2]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4.1.29, 2013도13937 ; 성추문 검사사건).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542 문 14 ㉓

② ○ ⇨ 대판 2007.10.12, 2005도7112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502 문 2 ㉑

③ ○ ⇨ 대판 1985.5.14, 83도2050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504 문 6 ㉑

④ × ⇨ 재물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4.12.22, 94도2528). 김현형법각론 기출총정리 P. 507 문 9 ㉑

### ▶ 교재소개





# 김현 형법 휴게실

## 경찰 2차 시험 문제 및 해설

적중률 95 %

교수명/과목	강의정보
<p>김현</p> <hr/> <p>형법</p>	<p><b>6월 김현 형법 문제반(요약+기출)</b>  <b>개강일 : 2015/06/22</b>            시간 : [월] 09:00-13:00 [8주10회완성]            * 9월 19일 경찰3차 시험대비 김현 형법(요약+기출)강의 * 형법 이론+조문+판례 완벽반영 최고의 문제풀이 * 무통장입금이나 카드결제후 결제하는동시에 수강이 됨 * 신분증 지참하고 학원 접수처에서 수강증을 발급받아야함,  <b>강의구매: □ 2개월 150,000원</b></p>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김현 형법 기출총정리 형법총론/각론(박문각)/교재별도구매            * 실강수강후 동영상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8주 10회완성</p> </div>
<p>김현</p> <hr/> <p>형법</p>	<p><b>7월 김현 형법 기본이론</b>  <b>개강일 : 2015/07/01</b>            시간 : [수목] 09:00-13:00            * 2016년 경찰채용/경찰승진/경찰간부/법원직/검찰직 * 형법 이론+조문+판례 완벽반영 최고의 강의 * 현직경찰관이 추천하는 강의/교수  <b>강의구매: □ 2개월 150,000원</b></p>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2015 EBS 김현 형법총론/각론(박문각)            * 2개월완성강의(1개월수강불가능)            * 실강수강후 동영상 전환이 불가능합니다.</p> </div>
<p>김현</p> <hr/> <p>형법</p>	<p><b>8월 김현 형법(전범위모의고사)</b>  <b>개강일 : 2015/08/17</b>            시간 : [월] 09:00-13:00 [3주완성]            * 9월 19일 경찰 3차 시험대비 전범위 랜덤식 모의고사(3주완성)* 무통장입금이나 카드결제후 결제하는동시에 수강이 됨 * 신분증 지참하고 학원 접수처에서 수강증을 발급받아야함,  <b>강의구매: □ 1개월 50,000원</b></p>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전범위 랜덤식 모의고사(특수프린트)            * 학원실강 수강후 동영상 전환이 불가능합니다.</p> </div>
<p>종합강의</p> <hr/> <p>공통</p>	<p><b>6월 합격마스터 플랜(1+2+3)패키지(김현김승봉교수팀) 🔍</b>  <b>강의구매: <span style="color: red;">신성</span> 4개월 660,000원 (40%)</b></p>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1단계 : 심화핵심요약+심화기출분석(과목별 기출문제집)/6월 22일 개강(8주 10회완성)            * 2단계 : 전범위 랜덤 모의고사식(프린트OR제본)/8월 17일 개강(3주 3회완성)            * 3단계 : 모의고사 강평반(프린트)/9월 7일 개강(4회완성)            * 홈페이지 공지사항 시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6월 1일 생성예정)            * 실강수강후 동영상 전환이 불가능합니다.</p> </div>